

성동구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지원 협약서

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'성동구'라 한다)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, (주)신언서관(이하 '신언서관'이라 한다)은 성동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성동구민 및 직원들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, 온라인 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등 사이버교육을 위해 성동구,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, 신언서관 3자간 협약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주요내용) 성동구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및 신언서관은 성동구민 및 직원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① 성동구
 -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신언서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 지원
- ②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
 - 성동구민 및 직원 등이 국가공인자격증 수강 시, 수강료 60% 할인
 - 성동구민 등이 수강한 수강료의 5%를 성동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부
- ③ 신언서관
 - 성동구민 및 직원 등이 민간자격증 수강 시, 수강료 무료 제공
 - 민간자격증 발급수수료 5%를 성동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부
- ④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및 신언서관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성실하게 강좌를 운영한다.

제3조(비밀 준수)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정보 및 비밀을 보장하며,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 본 조항은 협약기간 및 협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발생한다.

제4조(양도금지 등) 협약 당사자들은 본 협약으로 인해 취득한 권리, 의무, 지위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, 위임, 대행, 대리하게 하거나 증여, 상속,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.

제5조(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, 협약기간의 연장 및 내용변경 등은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. 단,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협약이 없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해지) 협약 당사자들은 본 협약내용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중요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교환)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9월 9일



한국지역사회협의회
회 장 이연숙



서울특별시 성동구
구청장 정원오



(주) 신 언 서 판
대 표 정일준
